#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6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복기왕·장철민·한민수

이연희 · 김태선 · 채현일

염태영 · 정준호 · 정성호

박용갑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법」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,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,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, 음모한 경우에는 군 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,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,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군형법」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 (생	제2조(신분적 재판권) ① (현행과			
략)	같음)	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	2			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				
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				
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. 다				
만,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				
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				
하지 아니하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의2. 「군형법」 제1조제1항부</u>			
	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			
	이 범한 「형법」 제87조부터			
	제90조까지의 죄		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